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7호서식] <개정 2024. 4. 9.>

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자료 [ ] 보호 [ ]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5일(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)

요청인 (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)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)
	소재지(사업장)	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

요청사항	① 자료 보호(보호기간 연장) 요청 요지 및 이유
	보호대상 자료 목록

수입자 (요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)	② 상호(명칭)	③ 사업자등록번호	④ 대표자	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⑥ 수입량(톤)	⑦ 수입국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

자료 [ ] 보호 [ ] 보호기간 연장 을(를)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_____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뒤쪽 참조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	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. 1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연장을 요청하는 경우: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.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·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: 국외제조·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	수수료 없음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,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.
2. ②란 ~ ⑦란은 요청인이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. 다만, ⑥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요청인	처리기관
	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

자료보호(연장) 요청서 작성	⇒	접수	⇒	검토	⇒	결재	⇒	통보
요청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요청인